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1월 1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계량측정제도과 김동호 과장(509-7230), 박용균 연구사(509-7232)		

설 명절 대비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저울 특별단속 실시

- 기표원,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16개 시·도와 저울단속 실시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설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술표준원에 구성된 계량기 상시 점검반원 합동으로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할 계획이다.

○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계획이다.

* 지난해(2011년) 저울 점검(설, 추석, 휴가철 등 3회)에서는 전국적으로 72,566대의 저울을 점검하여 이중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오차를 초과하는 등 676대의 저울을 적발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

□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술표준원에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저울 눈금이 '0' 인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 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이나,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붙임】

‘12년 설 대비 계량기 특별점검 실시계획

1. 점검 개요

○ 점검기관 : 16개 시·도(230개 시·군·구) 및 기술표준원 계량기 상시점검반

○ 점검기간 : ‘12.1.16~1.20(5일간)

○ 점검대상 : 상거래용 저울(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 점검장소 :

-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저울은 점검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 점검

- 설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거래가 활발한 유통업소, 정육점, 전통시장,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2. 주요 점검내용

○ 위변조·조작, 검정 미필 및 사용공차 초과 등의 중대 위반사항

- (변조 및 조작여부) 봉인 훼손, 눈금판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등
- (검정 여부) 제작·수입검정 필증 부착유무
- (사용공차 초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공차도 초과

○ 구조 및 정기검사 미필 등의 단순 위반 사항

- (구조불량) 영점 조정장치 불량, 지시부 훼손 등의 불량 유무
- (정기검사 여부) 수시검사 증인 및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 (저울훼손) 눈금판 파손, 수평장치 파손 유무

3. 점검방법

○ 부정계량기는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별지 제33호 서식의 “부정계량기 표시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 변조 및 조작여부

- 접시지시저울 및 전기식지시저울 등 봉인 훼손, 탈락(손으로 확인)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눈금판의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여부

○ 검정실시 여부

- 제작·수입검정 또는 수시검사 증인 확인

○ 정기검사 여부

-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확인

○ 영점조정 및 수평유지상태

- 사용 전 지시바늘 또는 눈금을 “0”에 맞추어 놓고 계량하는지 여부
- 견고한 검사대 또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지 여부와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구조불량 및 기타 확인

- 곡물거래 등에 있어 법정계량기가 아닌 되, 말 등의 사용 여부
- 눈금판 등이 비법정계량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 눈금판, 유리 등의 파손상태 및 바늘이 휘어 있는 상태 등 확인

○ 사용공차 초과여부

- 분동을 사용하여 계량기별 사용공차 초과여부 확인

 * 분동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에 규정한 기준분동 set(500 g, 1 kg, 2 kg, 5 kg, 10 kg)((지자체별 준비)

- 측정할 곳은 3곳에서 측정함(500 눈금 이하, 500눈금 초과 2,000눈금 이하, 2,000눈금 초과)

- 사용공차

등급 분류	구분	사용공차
3등급 저울	500 눈금 이하	1눈금
	500눈금 초과 2,000눈금 이하	2눈금
	2,000눈금 초과 10,000눈금 이하	3눈금
4등급 저울	50눈금 이하	1눈금
	50눈금 초과 200눈금 이하	2눈금
	200눈금 초과 1,000눈금 이하	3눈금

* 일반적으로 3등급 저울은 전기식지시저울, 4등급 저울은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임

4. 점검결과 조치

○ 중대위반 : 위·변조 저울사용 등 고의·중대 사항은 고발조치

* 위·변조, 미검정(제조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공차 초과 하면서 정기검사미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위반 :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단순 위반사항은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

* 단순위반 : 구조불량, 정기검사 미필, 단순 허용오차 초과
* 정기검사 미필, 단순 허용오차 초과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나, 고의가 아닌 경우 정기검사를 필 하거나 수리 후 사용토록 계도

5. 기타 행정사항

○ 각 지자체별로 부정 계량기에 대한 소비자 고발 센터 운영

○ 단속용 분동은 각 지자체별로 준비

○ 단속전 점검방법 숙지

* 점검에 따른 기술적 문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785-1260) 또는 상시점검반원에게 문의

○ 상시점검반과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일정·장소 등을 점검반원과 협의·추진